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64 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이강일·김남근·김남희

김우영 · 김현정 · 민병덕

박정현 · 염태영 · 이용우

황명선 · 황운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 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.

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,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 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. 다만,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 표위원과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국방부) ① (생 략)	제33조(국방부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
	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
	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
	수 없다. 다만, 국회의장이 국
	회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합
	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
	<u>아니하다.</u>
<u>②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⑦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